

【 3 】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6. 8. 21.

제 안 자 : 박영원의원외 2인

□ 제안이유

- 양주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면학을 정려케하고
-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지정기탁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총기금 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함. (안 제2조)
-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양주군에 계속 3년이상 거주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중에서 성적이 전학년의 20/100 이내인 자와 저소득층으로 성적이 전학년의 30/100 이내인 자 및 특기학생으로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에게 지급 함. (안 제9조)
- 장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양주군향토장학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선발 함. (안 제6조)
-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연간 등록금의 80% 이하로 함. (안 제9조)

##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면학을 정려케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주군 향토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총기금 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예치)**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등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을 선정 예탁한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장학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관리 한다.

② 기금의 수입·지출등 출납에 관하여는 양주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며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부군수
2. 분입운용관 : 내무과장
3. 기금출납원 : 행정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상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장학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양주군 향토장학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읍면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 거주한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등학생과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생으로 한다.

1. 고등학교 ·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그 성적 순위가 재직학년의 전학기(신입생의 경우 입학전 학기) 정원의 100분의 20이내(대학생의 경우 B학점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저소득층(가계 월평균 소득이 60만원이하인 세대)의 자녀로서 그 성적 순위가 재직학년의 전학기 정원의 100분의 30이내(대학생은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
3. 특기장학생은 예 · 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8조(장학생의 선발)** ①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 절차에 의한다.

1. 읍 · 면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적격자를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그 배분비율은 읍 · 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추천된 학생분포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적립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2.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상학금은 연간 등록금의 80% 이하로 한다.

**제10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양주군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학칙위반으로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군에 입대하거나 기타 사유로 휴학을 하였을 때
4. 조례에 의한 장학금 이외의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

**제11조(결산보고서작성등)**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장학금의 지급은 기금 최소 목표액의 50%(5억원) 이상이 적립되었을 때부터 지급한다.